

탄현면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모집 공고

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 제1항에 따라 탄현면 단위 주민을 대표하여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주민자치조직인 주민자치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1. 모집기간 : 2026년 5월 20일(수) ~ 2026년 6월 5일(금)(근무시간 중에 한함)
2. 접수장소 : 탄현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
3. 모집인원 : 22명 이내
 - (모집분야) 개인공개모집(60% 이상), 탄현면 소재 기관·단체 추천모집(40% 이하)
4. 자격요건
 -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서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며, **주민자치학교 6시간 이수한 사람 중 선정하며, 23명 이상 지원시 추첨으로 진행하여 선정 할 예정.** 다만, 「공직선거법」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선정될 수 없습니다. (위원 위촉 후라도 결격사유 확인 시 해촉될 수 있음)
 - 탄현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 -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탄현면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
 - 탄현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
 - 탄현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, 기관, 단체* 등에 속한 사람
 - ※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
 - * 기관·단체의 인정범위

구 분	범 위
기 관	근거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
단 체	· 직능단체 : 각 읍면동 지역의 공익을 위해 조직한 단체로 읍면동 주민센터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정관, 회원명부, 회의록 등을 근거로 최근 6개월 이상 활동내역 있는 단체 · 공공단체 :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아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행정을 수행하는 법인단체

5. 위원의 임기 : **위촉일부터 ~ 2026.12.31.까지**
6. 신청방법 : 탄현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**방문접수**(평일 근무시간 내 9시~18시까지 제출)/ 또는 **이메일 접수** (giraffe79@korea.kr)

7. 제출서류 : 위원신청서(서식1), 개인정보처리 동의서(서식2), 단체부문 위원 추천서 (단체에 한함(서식3)), 자격에 따른 증빙서류(아래 표 참조), 교육이수증
 ※ 신청서식은 접수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, 파주시 홈페이지 '고시공고'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
구분	자격에 따른 증빙서류
공통	1. 탄현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▶ 주민등록초본(공고일 기준 주소 확인용) 2.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탄현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▶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3. 탄현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▶ 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 4. 탄현면 소재 각급 학교, 기관, 단체의 임·직원 ▶ 재직증명서 또는 활동증명서
단체추천 모집분야	해당 지역 소재 학교, 기관, 단체*에 소속된 사람 ▶ 재직증명서 또는 현재 활동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※ '단체'의 경우 직능단체/공공단체 확인 서류 필요 ex) 정관, 회의록, 단체회원명부, 6개월 이상 활동 실적 증빙서류

8. 선정방법 : 신청자격(개인 및 단체분야)요건 적정 여부 및 주민자치학교 6시간 수료자 중 조건확인 후 선정※ 정원초과 시 추첨으로 선정 할 예정

위원신청(접수) ▶ 주민자치학교 6시간 이수 ▶ (공개추첨)^{정원초과 시} ▶ 위원 선정

9. 주민자치학교 안내

- **위원 모집신청 후 파주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기본교육(6시간)을 사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위원 공개추첨 자격이 주어집니다. (미 이수 시 선정불가)**
 (※ 경기도 지식 (<https://www.gseek.kr>) 내 '경기도 주민자치회 온라인 기본교육'을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.)

10.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무 등

-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 원칙
- 「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6조의 의무 수행

11. 결과발표 : 개별통지, 파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

12. 기타사항

-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의거 특정성별이 60% 이하가 되도록 추천합니다.
※ 모집별 정원 미달 시도 특정 성비 비율을 맞추기 위해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.
-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매월 자원봉사활동을 하여야 합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만 사용합니다.
- 「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, 「공직선거법」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.
- 지원서 제출 당시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자격에 해당했던 자가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사업장 등을 그만두는 등 「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통해 규정한 지원 자격에 해당 안 될 시 선정 제외

13. 문의사항 : 탄현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(☎ 031-940-8084)

2026년 5월 20일

탄현면 주민자치회

